

- 「대구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」 -

검토 의견서

1. 발의연월일: 2022. 1. 25.

2. 발의자: 김화덕 의원 등 8명(박정환, 박왕규, 안대국, 윤권근, 배지훈, 정창근, 홍복조)

3. 제안이유

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발생하는 차별을 예방하여,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안제2조)
- 나. 장애인 의사소통의 권리(안 제3조)
- 다.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(안 제4조 및 안 제5조)
- 라.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(안 제6조)
- 마.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(안 제7조)

5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- 가.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제23조
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제25조

6. 검토의견

- 가. 본 조례안은 청·시각 장애인, 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자기 선택 및 결정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
- 나. 우리 구에서는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구청, 복지관, 장애인 단체 등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
- 다. 이에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의거,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됨. 다만, 시행 중인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확대 및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